

공고 제2024-81호

정읍시가족센터 사회통합 강사 채용 공고

정읍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전문기관으로 2025년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2월 20일

정읍시가족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 | |
|-------------------------|----------------------|--|
| 구 분 | | 모집분야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
| 모집인원 | | 한국어와 한국문화 - ○명, 한국사회이해 - ○명 |
| 담당업무 | | 강의, 평가, 출석 관리, 수강생 관리, 교육 참석 등 |
| 근무형태 | | 시간제근로(계약직) |
| 강사 지원 자격 | 한국어와 한국문화 |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나.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 교원양성과정 (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 | 한국사회 이해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
| 근로 조건 | 강의장소 | 정읍시가족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의실 - 대면 및 비대면 강의 가능자 - 일반운영기관 파견 가능자 |
| | 강의기간 | 2025년도 학사 운영에 따름, 협의 필요 |
| | 강의시간 | 주중 및 주말 또는 야간 (기관에 개설되는 교육과정에 따름) |
| | 강사료 | 2025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름 |

2. 채용일정

가. 채용공고: 2024년 12월 20일(금) ~ 2025년 1월 3일(금), 15일간

나. 서류접수: 2024년 12월 20일(금) ~ 2025년 1월 3일(금) 17:00까지

다. 접수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중앙2길 22, 2층 사무실

라. 면 접 일: 2025년 1월 6일(일시 미정) 추후 안내 및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마. 공고장소: 정읍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사회통합 정보망, 정읍시청 자유게시판,
톡톡밴드(4건)

3. 전형방법

○ 서류심사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심사(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 대상자에게는 장소 및 시간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4. 응시관련 제출서류

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지원서 1부.

나.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등록 신청서 1부.

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이력서 1부.

라.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마.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바. 사회통합 강사 서약서 1부.

바. 학력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사. 해당 분야 자격증 및 수료증, 경력증명서 등

아. 강의 교안 제출(해당자)

5.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⑦ 「출입국관리법」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1호~6호, 9호~11호, 13호, 19호), 제95조(1호~6호, 8호, 10호), 제96조(1호~3호), 제97조(1호, 2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⑧ 「규정 위반 강사 처분기준」상의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서의 활동이 금지된 자

7. 서류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2024년 12월 20일(금) ~ 2025년 1월 3일(금) 17:00까지
- 접수방법: 방문접수, 메일접수
- 방문접수: 정읍시 중앙2길 22 정읍시가족센터 2층 사무실, 교육컨설팅팀
- 메일접수: jeongda2010@hanmail.net
- 문의처: 정읍시가족센터 ☎ 063)531-0309

8. 기 타

가. 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신원 및 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결과 확인 이전에 채용될 수 있으나, 신원 및 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 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제출서류의 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바.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특수취급우편물을 이용하여 반환

※ 구직서류를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 센터에서 고지한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 서류를 파기(파쇄)

※ 전자적 파팅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